

【문 1】 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 ②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으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 ③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 ④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풍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형식상 전혀 별개의 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2】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의 피고지분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문 3】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②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되더라도, 위 점유자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문 4】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부담한다.
- ②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는 자로서 본인의 승낙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문 5】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②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③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문 6】 공유 및 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공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공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공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문 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이 없으므로 매수인으로서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없다.
- ④ 주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주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주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문 8】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 ③ 피해 당사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공박은 대리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문 9】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거가족인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을 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고, 비록 임대인이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보증금이 수수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문10】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의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는 위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야만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문11】 채권자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가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④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문12】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바,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②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중 1인으로부터 또는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해지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3】 매매의 예약 또는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응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는 채권자 전부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③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④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 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문14】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③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 ④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문15】 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바, 일단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소비대차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문16】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매수 후 철거한다는 조건 없이 그 경매 절차에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④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17】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③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1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

【문19】 유류분 및 기여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수증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③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④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문20】 입양 및 친양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③ 친양자 입양에 따른 효력으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므로, 실령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친생의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이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문21】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
- ②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원고 중 1인만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된다.
- ③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또는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22】 전자소송의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에 대한 추완상소 또는 재심이 제기된 경우, 그 추완상소나 재심이 적법하면 상소심이나 재심에서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 ③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전자기록 사건이 되지만,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때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심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효력이 유지된다.

【문23】 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사건으로 심리하는 도중에 합의부 사건으로 청구가 확장된 경우 확장된 소는 합의부 관할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적법하게 병합된 것이라면 관할원인으로 된 청구가 나중에 취하, 각하되거나 변론의 분리가 있어 병합관계가 소멸되어도 다른 청구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할 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
- ④ 관할권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24】 민사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를 경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소장부분 송달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 ②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피고경정은 신청권자인 원고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피고경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소의 제기예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는 경정신청서의 제출시 발생한다.

【문25】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인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② 1개의 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지당권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각 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③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임료 등은 부동산의 인도소송에 부대목적이 되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문26】 무변론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 ②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는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 ③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④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속관련 심판문만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문27】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이자 약정이 없음에도 무조건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로 청구하도록 하거나 연 15%의 이율 약정이 있음을 주장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② 피고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한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자신의 것인지 여부를 밝히도록 피고에게 석명하도록 권고한다.
- ③ 보증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인영·필적감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④ 부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고, 항변에 대한 증명책임은 항변하는 자가 부담한다.

【문28】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송달이 무효인 경우, 송달서류가 기일통지서인 때에는 기일 시작의 효력이 없고 송달서류가 판결정본인 때에는 설령 당사자가 판결선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 ②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별도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당사자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다.
- ④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 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발송송달도 할 수 없다.

【문29】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흠은 치유될 수 없으므로, 판결정본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영업소·사무소가 폐쇄되거나 이전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근무장소 등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다.
- ③ 재가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일단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면 수감된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 각자대표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하면 족하지만,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30】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방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비고란에 각 증거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한다.
- ② 증거목록은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직권분마다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 ③ 변론을 병합한 때에는 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두고,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에 병합 이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④ 재심사건은 재심기록에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한다.

【문31】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론종결 후에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 ② 판결 선고 직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 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우선 피고에게 취하서 부분을 송달하고 이와 별도로 양쪽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한 개의 전부판결을 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항소한 때에는 병합청구 모두 확정차단 및 이심되고,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등을 통하여 청구를 확장하지 않는 한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에 확정된다.
- ④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도 상소기간 경과 후에 취하(또는 취하간주)되거나 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

【문32】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조사에서는 증인신문사항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 ② 일단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인은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문서제출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프라이버시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의무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에 관하여 법원은 그 문서의 제출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서의 소지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문서를 비공개적으로 심리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기일에서 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문3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준비서면 등의 제출서면도 공동으로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단독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된다.
- ④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

【문34】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 ② 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참가신청의 취하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허용되며, 참가신청의 취하에 있어서는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 ④ 보조참가인에게는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독자적인 소송참여권이 인정되므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소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35】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룰 수 있고, 항소심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판결로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의 경우에는 그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야 한다.
- ②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는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분할측량감정을 신청하도록 보정권고한다.
- ③ 원고가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자 또는 그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 ④ 원고가 경락을 받아 인도 및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소유권취득일로 차임청구 기준일이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보정권고한다.

【문37】 다음 중 변론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소액사건에서 판사가 바뀐 경우
- ② 소송이송에 있어서 이송 전에 변론이 진행된 경우
- ③ 환송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경우
- ④ 재심사건의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경우

【문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부분이 송달되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없다.
- ② 기일해태는 동일 심급의 동종의 기일에서 2회 있어야 하나 반드시 연속하여 2회 계속될 필요는 없으므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1회,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1회의 쌍방 기일해태가 있는 경우에도 2회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③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이후 소취하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취하로 종국처리하여야 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째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39】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도 포함된다)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②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취하권자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면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
- ③ 변론기일에서는 말로 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말로 소를 취하한 때에는 변론조서에 ‘원고, 소 취하’라고 기재한다.
- ④ 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40】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때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이행권고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그 이의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권고결정 상에 원고로 표시된 양도인이 그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다룰 수 없고 양도인을 상대로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